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06
----------	------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6. 1.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 6. 11.
3. 상정일자 :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본부장)

1.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탈빈곤과 빈곤대물림의 예방 및 상대적으로 근로가 더욱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름통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시장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설(안 제4조제4호)
- 시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의 근거 및 지원 대상자, 현금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제시(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1,780백만원 반영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2) 입법예고 (2018. 3. 29. ~ 4. 18.) 결과 : 해당없음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 붙임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서 추진중인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 및 사업을 추가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서울시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
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최
초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2017년 11월 ‘서울
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¹⁾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지원 대상자 모집 및 심사 후 7월에 최종 선정 대상
자를 발표하고 지원할 계획임.

1)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 - '18년 「서울시 중증 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881호)에서 발췌

2 주요 내용 검토

가. 정의 및 지원 규정(안 제2조제7호, 제4조제4호)

- 본 개정안은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인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조례”) 제2조 정의 규정에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음.
- 해당 조항은 현재 서울시에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조례 제4조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인데, 본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제4호에 추가 신설하였음.
- 개정안 제2조제7호와 제4조제4호는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

나.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안 제7장 제18조)

- 개정안은 ‘제7장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를 신설하였음.
- 그런데 제7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개정안 제2조제7호 정의 규정으로 신설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용어가 동일하게 쓰이지 않고 ‘자산형성지원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각각 쓰여, 동일 조례 내에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사용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 제18조에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 신설한 제2조제7호 정의 규정은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였는데,
 - 개정안 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부 금액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의미의 중첩이나 표현의 모호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18조에서 명시한 중증장애인의 요건뿐만 아니라 연령 기준 및 신청 제외대상 등이 있음.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10~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매월 저축액에 15만원씩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약정 중도해지 등에 따른 관리 기준²⁾은 서울시에서 세부 시행계획에 의해 별도로 정하고 있음.

이름통장 주요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 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③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및 신용불량자 등은 제외
-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

본인저축액(선택)①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②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①+②)	25만원	30만원	35만원
3년 후 만기적립금 예상액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장애인 자산형 성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제7장 제18조는 조례상 용어의 통일, 현행 사업 내용을 반영한 주요 지원 기준 명시 및 세부 지원 기준을 정함에 따른 근거 규정 보완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요청('17.12.5) 사항(일정한 적립기간 설정 및 중도해지 시 제한요건 설정) 반영

<수 정 안>

개 정 안	수 정 안
<p><신설> 제7장 <u>자산형성지원 사업</u></p>	<p>제7장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u>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 align="right"><신설></p>	<p>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p> <p>① <u>시장은</u>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u>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 꿈나래통장 등 기존의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지원내용을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하 “자산형성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규정,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해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

3 종합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한 예산 확보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 절차 완료³⁾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안 제18조는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2018.3.1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절차 완료 통보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506
----------	------------

제안연월일 : 2018년 6월 2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의 규정에 신설한 용어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일관성 있게 표기하고,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정의 규정에 맞추어 변경함(안 제7장).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 기준을 명시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7장의 제목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한다.

개정안 제18조 제목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를 “저축액의 150%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p>
<p>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신설></u></p>	<p>제4조(지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자산형성지원사업</u></p> <p>제18조(자산형성지원사업) <u>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u>를 둔 장애인으로서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9호에 따른</p>	<p>제4조(지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u></p> <p>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① <u>시장은 서울특별시</u>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조제9호에</p>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 (생략)	<p><u>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p>	<p><u>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p><u>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p>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제17조 다음에 “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삽입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u></p> <p>제4조(지원)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제7장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u>제18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u></p> <p>① <u>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제18조</u> (생략)</p>	<p>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u>제19조</u> (현행 제18조와 같음)</p>